

Newszine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September 2018, Issue 3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발표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UPDATES 법률정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 관련 동향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및 감축 목표 상향

환경부, 사업장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NEWS 새소식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브랜드 6위 선정 - Acritas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8

4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Benchmark Litigation Asia Pacific 2018

2018 비온드블록서밋 서울(BEYOND BLOCKS Summit Seoul) 발표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Young IFA Network 하계세미나 발표

한국공학한림원 IP전략포럼 참여 - '통상 마찰과 IP,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2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 강의

Legal Risk Management 과정 강의 - '부패방지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아동성범죄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지원

2018 호프컵(Hope Cup) 행사 지원

CASES 업무사례

한국콜마 컨소시엄의 CJ헬스케어 인수 관련 자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자문

난다의 지분 전부 매각 관련 자문

소셜커머스 방식의 상품판매 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한 행위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는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성공적으로 방어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 해외 발행 자문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

싱가포르계 부동산투자회사 아센다스자산운용의 서울 최초 4성급(특2등급) 호텔 KY헤리티지 호텔 동대문 매수 자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 사건 승소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1)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역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2)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된다고 하여, 운영비 원조에 대해 엄격한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헌법재판소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1)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2)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을 막아, (3)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향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시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

최동식 변호사(dschoi@kimchang.com), 김욱일 변호사(wookil.kim@kimchang.com)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18. 7. 16.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2016년경에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으나, 최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추가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은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2)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도입,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현재까지 금융위원회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에 한하여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금융기관들은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번 확대방안에서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에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도입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금융 보안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향후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권에 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2018. 6. 13.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구체적인 허가의 절차,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1. 국제재판부 설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국제사건'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건은 '국제재판부'가 전담합니다. 또한 추가로 4개 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어 변론 허가(국제사건 개시) 절차

법원은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원칙적으로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외국어 변론을 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은 국제사건으로 분류되어 국제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가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어 변론 허가를 한 사건이라도 당사자 모두가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거나 외국어 변론으로 인해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법원은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국제사건 재판 절차에서의 특이사항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영어 외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하며,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당사자 등의 말은 통역인이 통역(동시통역 원칙)합니다.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국어 번역문 첨부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건의 판결도 국어로 작성하여 선고하되,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로의 판결서 번역문을 송부합니다. 그러나, 상소기간의 기산 및 판결의 효력은 국어로 작성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은 국제재판부에서 국제사건을 운영하면서 점차 정립되어 나갈 것입니다. 국제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국제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호주 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사건으로서, 현재 해당 사건에 많은 지식재산권 실무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에서 호주 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박성엽 변호사(separk@kimchang.com), 이우주 변호사(wouju.lee@kimchang.com)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 8.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8. 10. 4.까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방향

1) 절차법제

(1) 처분시효 단축을 통한 방어권 보장	
처분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되, 담합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기준(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사건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을 유지
(2) 법 집행체계개선TF 논의 결과 반영	
사인의 금지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배소 시 자료제출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 지원 필요 시 영업비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가능
과징금 상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위반 억지효과 증대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

2) 경쟁법제

(1) 전속고발제 축소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담합사건의 90% 이상)’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
(2) 정보교환행위 규율 신설	
정보교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필요 정보 교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간 합의 존재를 법률상 추정 금지 행위 유형에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추가

3) 기업집단법제

(1)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다만, 법 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 축소(30%→25%→20%→15%)
(2)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사익편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3) 해외계열사 공시	
해외계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2. 시사점

1) 절차법제

- 일부 처분시효가 단축되기는 하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손해배상소송 시 자료제출 명령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방어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됨으로써 더욱 무거운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쟁법제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 형사분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일정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 합의 존재 관련 법률상 추정효과를 부여함에 따라, 동종기업 간 정보교환 행위가 담합으로 의심받을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기업집단법제

-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통해 동일인(총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2018. 5. 24.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017. 8.부터 2017. 12.까지 모든 산업의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하고 있는 분야”라는 배경 하에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는 점과 Best Practice(모범 거래 기준)를 반영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거래 관행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라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7개 입법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

-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
- 2018년 하반기 중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예정
-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하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적극 활용

2. 불공정 거래 행위 엄중 제재

-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고시 제정(예를 들어, 묶음으로만 공급하여 원하지 않은 상품 구입하게 하는 행위, 판촉행사 실시에 관해 대리점에 과도한 비용 부담,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의 매장 확대 또는 점포 환경 개선 요구 등)
- 보다 적극적인 직권조사 실시

3. 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 유도

-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설정
-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비용의 일부를 본사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 설정
- 신규 점포 개설 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 점포 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게 하는 계약 조건 설정

4. 대리점 협상력 제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 단체 구성 법제화
-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 금지 조항 신설

5. 실질적 피해 구제 수단 확충

-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향후 추가 확대 가능)
-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신설(‘민사소송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넓게, 손해액 입증과 관련된 증거의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열람 제한을 조건으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응 시 피해 대리점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향후 공정위의 대리점 관련 법 집행이 보다 엄격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리점계약서의 검토, 대리점과의 분쟁이나 공정위 등의 조사 대응뿐 아니라, checklist를 통한 대리점거래 실태분석, mock audit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리점법 관련 compliance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권

송선현 변호사(shsong@kimchang.com), 윤태한 변호사(thyoon@kimchang.com), 김성진 변호사(sungjin.kim@kimchang.com)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 관련 동향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01. 8.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수 차례 연장 및 재입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 6. 30.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도 금융 채권자들의 주도로 채무자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하여 금융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하는 외국 채권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의 성질이 ‘금융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촉법의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선적으로 입법의 공백에 대비하여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의 내용은 기존의 기촉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될 예정이지만, 기촉법과 달리 협약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들에게는 협약 내용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속한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무

백우현 회계사(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bmjung@kimchang.com), 김성식 회계사(sungsik.kim@kimchang.com)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18. 7. 30. 기획재정부 및 2018. 8. 10. 행정안전부는 개정세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제출 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12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대부분 2019.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폐지(관세 및 지방세 감면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을 반영하고,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감면이 폐지됩니다. 관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취득세, 재산세 면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9. 1. 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8. 12. 31 이전 신청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른 감면이 유지됩니다.

- 2)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적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구분이 다른 경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국내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 두2710 판결). 위 판결은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할 경우에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구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국내세법의 다른 규정에까지 해당 소득구분이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번 개정안은 관련 세법 조문이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개정 목적이 위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권이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이 충돌 시에 정부가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권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하였으며, 2019. 1. 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회사 지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30~40%	50~80%	<u>90%</u>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2. 부가가치세

1)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 및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2019. 1. 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5항)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율 인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기간이 연장되며, 201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 가산세: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0.3%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 시
 -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0.5%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 시

3)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래의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9. 1. 1. 이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 계산서 미수취·거짓수취
-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

3. 지방세

1)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합병 등 기업 구조개선의 지속적인 지원 및 감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감면율 및 감면대상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 2021. 12. 31.까지를 일몰기한으로 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적용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적격합병 감면: 취득세의 50% * (사업용 재산 한정)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 사업 법인과의 합병 의 경우에는 60%
- 적격분할·현물출자 감면: 취득세의 50%

법인 자산교환이나 포괄적양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종료되며, 개정 규정은 20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의무자 경정청구 절차 신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특별징수대상자·의무자의 경정청구 절차 규정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세액의 과다징수 여부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자·의무자의 경정청구 절차를 국세와 동일하게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9. 1. 1. 부터 적용됩니다.

환경

이윤정 변호사(yjlee@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hyeongjun.hwang@kimchang.com)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및 감축 목표 상향

2018. 7. 24.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30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하고, 2030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 계획기간(2018-2020)에 적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및 감축 목표 상향

확정된 2030 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국내 감축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기존 목표인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되며,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는 기존 목표인 11.7%에서 20.5%로 상향 조정됩니다.

2. 2차 계획기간(2018-2020) 배출권 할당계획 및 일정

환경부는 2030 로드맵의 내용을 반영하여 2차 계획기간(2018-202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26개 업종에 대하여 총 배출권 할당량 중 3%를 경매방식으로 유상할당 실시
-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의 할당방식(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 확대(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종 추가)

2차 계획 기간의 배출권 할당은 다음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18. 8.: 기존 시설에 관한 할당 신청
- 2018. 10.: 해당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통보
- 2018. 11.: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 2018. 12.: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확정

한편, 신설·증설되는 시설은 2차 계획기간 중 상시 할당 신청을 통하여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며, 신설·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은 총량 상한선(Cap)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예상되는 규제 강화 및 대응 방안

2차 계획기간의 규제는 1차 계획기간에 비하여 급격하게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3차 계획기간(2021-2025) 및 그 이후에는 종전 대비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 목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국가적으로 충분한 감축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2차 계획기간의 규제도 그리 강화되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현 시점(2차 계획기간 시작 시점)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배출권을 할당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차 계획기간에 할당 받는 양이 기준이 되어 2020년 3차 계획기간 할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2차 계획기간 및 이후의 할당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장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황산화물과 먼지 등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이 질소산화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질소산화물이 지목되면서 배출량을 억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라도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도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대기배출부과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되,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여 2020년 이후에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부과금의 액수는 부과단가와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부과단가는 2,130원/kg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부과단가는 기존의 기본부과금 대상인 먼지(770원/kg)나 황산화물(500원/kg)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환경부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 파악된 1,921원/kg보다 의도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수들은 황산화물 및 먼지와 동일한 수치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소산화물은 국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높은 비중(약 67%)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장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므로, 위 규제는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 농도 상승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S 업무사례

기업법무

한국콜마 컨소시엄의 CJ헬스케어 인수
관련 자문

한국콜마 주식회사(“한국콜마”) 및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8. 4. 18. CJ제일제당 주식회사로부터 CJ헬스케어 주식회사(“CJ헬스케어”)의 발행주식 100%를 약 1조 3,000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본건 거래”). 본건 거래로 한국콜마는 의약품유통생산(CMO) 사업에 CJ헬스케어의 전문의약품과 건강미용 사업을 융합하여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한국콜마는 다른 자산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대표로서 매각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자인 한국콜마 입장에서는 법률, 금융 및 세무, 의약품 제조 및 공급 과정을 포함한 업계 특유의 이슈들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건 거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약 1조 3,000억 원의 인수금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복잡한 지분 인수 및 대금지급 구조 및 세무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에서 한국콜마를 대리하여 업계 이슈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전문적인 실사, 거래서류의 검토 및 협상, 규제 관련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거래종결과정의 지원 및 추후 세무신고 준비 등을 지원하고, 복잡한 지분 인수 및 대금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자문

삼성전자 주식회사(“삼성전자”)의 주주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매도인들”)는 2018. 5. 31.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0.42%를 약 1조 3,000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본건 거래”).

본건 거래는 금산복합그룹인 삼성그룹 소속 금융회사인 매도인들이 금융계열사의 제조계열사 지분 10% 이상 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에서 투자 전반에 관한 풍부한 자문 제공 경험 및 이해를 기반으로,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거래 진행 관련 요청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본건 거래의 목적에 따른 사전 법률 검토, 거래서류의 검토 및 협상, 거래종결과정의 지원 등 거래 전반에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난다의 지분 전부 매각 관련 자문

글로벌 화장품 그룹인 로레알은 2018. 5. 2. 화장품 및 패션 업계에서 ‘스타일난다’ 브랜드로 유명한 주식회사 난다(“난다”)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매도인”)로부터 난다 지분 전부(100%)를 6,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수하였습니다(“본건 거래”). 로레알은 색조 화장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내 사업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난다의 지분 매각은 매매대금 결정 외에도 향후 수년간 난다의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언아웃(earn-out) 금액 산정 방식으로 진행되어, 거래종결 이후 매도인의 최고창의력책임자(Chief Creative Officer, "CCO")로의 역할 규정, 난다의 공동설립자이지만 난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사장 2명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 등이 중요한 협상 주제였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검토 및 조율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언아웃 지급약정 조건을 조율하면서 회사의 실정에 맞는 공정한 산정방식을 도출하였고, 거래종결 이후 기존 대표이사의 CCO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난다의 가치를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역할과 보상구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난다의 부사장 2명에 대해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증여 받은 다음, 매도인과 함께 난다 지분을 공동 매각하도록 하여 가장 효율적인 이익공유(profit sharing)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사무소는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성사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소송

소셜커머스 방식의 상품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한 행위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 방식의 상품판매업체("이 사건 업체")가 제품공급사("협력사")로부터 매입하여 물류센터 등에 보관 중인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자신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였다는 이유로 택배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택배업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인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택배업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업체가 (1)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운반한 행위(“본 배송”) 및 (2)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을 회수하여 자신의 물류센터로 운반한 행위(“반품 배송”) 모두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주체는 협력사라고 할 것이므로 ‘협력사의 요구에 응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울러 이 사건 업체의 본 배송 및 반품 배송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면밀한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1) 본 배송 및 반품 배송 모두 이 사건 업체의 필요에 따른 화물 운송이므로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이 사건 업체와 협력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매입계약도 거래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실질적으로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들이 2018. 7. 30.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전자상거래 및 운송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이 사건 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는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성공적으로 방어

공정위는 2018. 5. 31. 7개의 음원 제작·배포 사업체(“음원업체”)들이 공동으로 앱스토어 운영 사업자에게 특정 신생 음원 앱의 판매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함으로써 신생 음원 앱 개발자(“신고인”)의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인은 음원업체들이 공동으로 앱스토어 운영 사업자들에게 해당 앱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신생 음원 앱 출시에 따른 음원업체들의 수익 감소 우려에 따른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신고인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은 이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음원업체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신생 앱 개발자들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년여의 조사 끝에 (1) 신고인이 음원업체들과 정당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음원업체들이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음원 저작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는 점, (2) 음원업체들로서는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업계 공통의 대응이 필요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원업체들이 공동대응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신고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7개 음원업체 중 일부 업체를 대리하여,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2년 동안 이뤄진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적 측면 외에도, (1) 미국 및 EU에서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공동대응은 저작권 침해를 예방 및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는 점, (2) 여러 가지 논문,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에 신속한 집단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3) 공동 대응이 중복적 법적 대응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경쟁제한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심사절차종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증권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 해외 발행 자문

2018. 4. 17. 한화생명보험(주)(“한화생명”)는 10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금리 연 4.7%로 해외 발행하였습니다.

본건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업이 발행한 글로벌 신종자본증권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금번 발행으로 한화생명의 RBC 비율이 개선되고, 2021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한화생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신종자본증권 발행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를 비롯하여, 보험법 관련 규정상 자본인정기준을 고려한 규제준수,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자·배당지급조건, 중도상환조건 등을 검토하고, 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상 이슈 해결을 위해 감독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8. 6. 28.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과세되었던 이 사건은 지방세 과세당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촉발된 사건으로, 국내 조

세소송 사상 단일 쟁점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최대 규모(약 5,000억 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었으며 적격분할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판단하는 등 향후 기업구조재편 실무에서 참고할 선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OCI가 2008년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먼저 본 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하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위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분할법인 OCI에게 과세하였습니다.

OCI와 분할신설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법인세 사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지방세 사건)은 모두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납세자 승소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누4521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여러 중요한 쟁점들이 다루어졌는데, 대법원은 당초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던 원심의 법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분할법인의 특정 사업부문 전체가 아닌 특정 사업장(단일 사업부문의 일부)을 분할하거나, 사업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상 기존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의 일부가 옮겨가지 않더라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동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명시
- **승계 받은 자산의 1/2 이상 직접 사용:**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면서 고정자산을 사업부문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방식에 있어 업무위탁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고, 승계사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등

기를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계사업의 폐지로 간주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비록 분할법인이 해당 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본적으로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제도가 상법상 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을 전제로 법인세법에 규정된 적격분할 요건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소송팀은 납세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관련 법리를 새롭게 개발하고, 과세관청이 선임한 다수의 소송대리인과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을 한 끝에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연속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8. 7. 20.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최초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큰 추가비용 없이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시설물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자자본을 후순위차입금 등으로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자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은 낮게는 12%에

서 높게는 60%까지 형성되어 왔고, 이에 따라 세무상 그 손금산입의 적정성이 문제되어 왔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대법원 사건의 원고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수정산투자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 등 다수의 민간투자사업자가 조달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내지는 선순위차입금에 일부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이 "시가"라고 주장하며,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지급한 이자 중 과세관청이 주장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 불산입하였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사건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선순위차입금에 일부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시가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와 달리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그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이후 대법원은 수정산투자주식회사가 원고인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된 이 사건은, 정부 정책에 따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부 및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산정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판단한 점, 일반적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적정이자율 산정에 있어서도 이자율 결정과 관련된 경제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를 시사한 점 등 참고할 선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소송팀은 심판단계에서부터 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회사들을 대리하여 관련 법리를 개발하고 5년이 넘는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을 한 끝에 대부분의 회사들에 대하여 1심,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8. 7. 20. 최초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동산

싱가포르계 부동산투자회사 아센다스 자산운용의 서울 최초 4성급(특2등급) 호텔 KY헤리티지호텔 동대문 매수 자문

아센다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영하는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인 아센다스코리아호스피탈리티제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매수회사")는 2018. 5. 서울에서 최초로 국제기준 4성급 호텔로 공인 받은 서울 중구 광희동 소재 관광호텔인 KY헤리티지호텔 동대문(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을 케이와이개발주식회사("매도회사")로부터 총 730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KY헤리티지호텔 동대문은 국내 호텔 등급체계가 과거 무궁화 등급(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체계에서 2014년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등급(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체계로 변경된 후 서울 최초로 4성급 등급을 받은 호텔로, 최근 국내 호텔 매매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은 서울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인접한 KY헤리티지호텔 동대문의 매매는 국내 호텔관련 주요 거래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Y헤리티지호텔 동대문은 기존에는 매도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수회사는 이번 거래와 동시에 일본 소테츠 그룹의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소테츠인터내셔널한국("임차회사")에게 호텔 건물을 20년간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호텔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수취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호텔 매매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법률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합의서의 협상과 체결 등 일련의 자산 매매 과정뿐만 아니라,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인 매수회사의 설립 및 증자,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사원대출약정과 지분증권양수도계약 작성 등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매매 거래 전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매매계약 및 책임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됨에 따라 매수회사, 임차회사 및 매도회사의 3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3자간 합의서의 작성, 협상 및 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싱가포르 투자자를 둔 매수회사, 일본 투자자를 둔 임차회사 및 국내 매도회사가 포함된 다국적 거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록 본건 거래가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도에 해당하나 국내 또는 서울의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호텔 임대업 시장에 경쟁제한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절차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국제중재·소송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 사건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중재 사건에서 한국 공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 소재한 합작법인의 부채정리 및 매각 과정에서 한국 공사와 중국 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하여 중국인들로 구성된 CIETAC 중재판정부 하에서 진행된 중재 절차에서, 한국 공사가 중국 회사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풍부한 국제중재 경험을 활용하여 승소를 이끌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의 특기할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공동대리인의 선정

이 사건의 준거법은 중국법이고, CIETAC 중재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세계 각국의 로펌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임 법률대리인(lead counsel) 지위에서 국제중재 경험이 풍부한 중국 로펌의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적절한 중재인 선임

중재 절차에서는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당사자들이 1명씩 선임하고, 의장 중재인은 CIETAC에서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상대방이 선임할 중재인의 범위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의 국제중재로서의 성격을 잘 이해하여 중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재인을 공동대리인과 협의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CIETAC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사기업들간의 국제중재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장중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중립적이고 중국 법리에 부합하는 판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3. 선임법률대리인(lead counsel)로서 3개 국어로 원활한 업무 진행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의 선임법률대리인(lead counsel)으로서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중국어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중국 공동대리인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CIETAC 중재판정부로부터 중국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중재인보수 등 CIETAC에 납부해야 하는 중재비용을 전부 중국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브랜드 6위 선정 - Acritas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8

김·장 법률사무소가 영국의 법률시장 조사기관 Acritas가 발표한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브랜드)'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랭크되었으며, 본 평가가 진행된 2014년부터 매년 10위권에 선정되며 아시아 대표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Acritas가 매년 발표하는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의 브랜드 파워를 평가한 지표로, 올해에는 11개국 440여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로펌의 인지도 및 선호도, 인수합병 및 다국적 거래 소송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상위 10개 로펌을 발표하였습니다.

4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18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송/분쟁 분야 법률시장 평가지인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18년판에서 4개 전 분야의 'Tier 1 (선두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사무소 총 11명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Dispute Resolution Star'와 'Future Sta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글로벌 법률매체 Euromoney가 발행하는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은 올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9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로펌 제출자료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우수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Firm Rankings (4개의 한국 대상 리서치 전 분야 'Tier 1' 선정)

- Commercial and Transactions
- Construction
- Intellectual Property
- Interna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Stars

- 김용상 (Commercial and Transactions)
- 박은영 (International Arbitration)
- 서정걸 (Commercial and Transactions)
- 양영준 (Intellectual Property)
- 윤병철 (International Arbitration)
- 이해광 (Commercial and Transactions)
- 장덕순 (Intellectual Property)
- 정진영 (Commercial and Transactions)
- 한상욱 (Intellectual Property)

Future Stars

- 김혜성 (Commercial and Transactions, International Arbitration)
- 윤세종 (International Arbitration)

사무소 동정

2018 비온드블록서밋 서울(BEYOND BLOCKS Summit Seoul)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가 2018 비온드블록서밋 서울 (BEYOND BLOCKS Summit Seoul)에서 ‘정부와 ICO -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이라는 주제의 패널토론회 세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블록체인 시대에 대비해 법률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면 현재 법을 바꿔서 증권법과 은행법, 유가증권의 하위법을 각각 새로 제정해야 한다”며 “5년 뒤에는 안정적인 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팩트블록, 비온드블록, 해시드의 공동주최로 2018. 7. 17.~18.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본 세미나는 코리아블록체인 위크 2018(KBW 2018)의 메인 행사로서 블록체인 전문가와 개발자, 투자자, 오피니언 리더 등 혁신을 선도하는 2,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Young IFA Network 하계세미나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재혁 변호사와 안재혁 변호사가 2018. 6. 29. 2018년 Young IFA Network (YIN) 하계세미나에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제1세션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쟁점들로는 (1)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2) 공연한 조약배제와 숨은 조약배제의 구별, (3)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의 성격 및 적용 범위, (4)

조세조약 규정과 국내세법의 규정이 충돌할 때의 소득구분 등을 다루었습니다. 위 발표에서 임 변호사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을,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을 각각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이른바 “병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반하는 숨은 조약배제(hidden treaty override)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안 변호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주제로 한 제2세션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어 왔는데, 안 변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중 조세조약 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지0333, 2017. 6. 8.)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산하단체인 YIN은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는 전세계적 네트워크로, 분기별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젊은 조세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과 인재 양성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 IP전략포럼 참여 - ‘통상 마찰과 IP,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가 2018. 6. 26. 한국공학한림원 주최 제2회 IP전략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통상 마찰과 IP,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본 포럼은 지식재산(IP) 통상압박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점검하고, IP 경쟁력 강화 및 IP 분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제2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 강의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태, 강인제 변호사가 2018. 7. 23. 제2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 특화과정에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김 변호사와 강 변호사는 각각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규제동향 및 분쟁 사례’ 및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주최로 열린 본 과정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을 위해 CP 규정·지침 마련 등을 당부하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와 관련해 제약사의 내·외부적 관리감독 역할을 강조하고자 개설된 전문 교육과정입니다.

Legal Risk Management 과정 강의 – ‘부패방지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강인제, 권혁찬, 최규원 변호사가 Legal Risk Management 과정의 ‘부패방지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세션에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교육 과정은 Thomson Reuters/LAWnB의 주최로 2018. 7. 13.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기업 법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희 사무소 변호사들은 부패방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최신 집행 동향 및 주요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회공헌

아동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지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한국여성의전화 및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3자간 협력을 통하여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공익법률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지원하며, 아동 성범죄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및 뉴욕주 등에서의 소멸시효 특례규정들을 비교 분석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자료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해당 소송을 프로보노로 진행 중인 개인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8 호프컵(Hope Cup) 행사 지원

2018. 9. 13.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2018 호프컵(Hope Cup)” 행사를 지원하여 참여 아동들을 위한 환영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내 봉사동호회 K&C Friends는 호프컵에 참여하는 120여명의 아동들을 초청하여 함께 한복체험 및 고궁 관람을 한 후, 저녁에는 환영만찬을 진행하였습니다.

호프컵은 사무소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있는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주최로 10개국의 개발도상국 결연아동 120명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친선 축구대회이며, 취약아동들의 월드컵으로 불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몽골, 볼리비아,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스스탄, 태국이 참가하였습니다.

Newszine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9092 E-mail: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